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2022. 11. 0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주제 사회적경제 제도적 생태계 기반 구축

과제1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과제2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주제 협동조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과제3 | 협동조합 서면 및 전자투표제 도입, 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 확대

3주제 사회적가치 촉진 및 사회적경제 차별 개선을 위한 세제 정비

과제4 | 사회적경제 차별 개선을 위한 세제 정비

-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내국법인 인정, 협동조합 배당소득세 감면, 협동조합 조직변경 시 과세 문제 개선

과제5 | 사회적가치 촉진을 위한 사회적목적사용 비용 손금처리

과제6 | 비영리형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정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4주제 자활/택시/신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과제7 |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과제8 | 「여행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 택시협동조합 적용 제외

과제9 | 신협 타법인 출자 제한 해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5주제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10 | (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 소액대출, 공제사업 허용

주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연대포럼

주관

김태년 의원 윤호중 의원 남인순 의원 진선미 의원
신동근 의원 김영배 의원 양경숙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강은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공동주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후원

이로운넷 라이프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승석입니다.



먼저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사회적경제다움을 일구고 계신 모든 사회적경제인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최되는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 (비)대면으로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국감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사회적경제 연대포럼’ 윤호중 의원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남인순, 진선미, 신동근, 김영배, 양경숙, 이수진(비례) 정의당 강은미,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관단체로 함께 해주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모두 고맙습니다. 후원해주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로운넷, 라이프인에게도 따듯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수개월간 여러 차례의 현장 의견 수집 및 토론을 거쳐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주신 윤봉란 연대회의 제도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도개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올해는 사회적기업육성법 15년, 협동조합기본법 10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시민의 행복에 복무하는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목표 아래 꾸준히 실천하고 성장해왔습니다. ‘호혜와 연대’라는 사회적경제의 기본 가치는 오히려 위기 속에서 그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낡고 비합리적인 제도적 허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함께 숙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전국에서 수집된 40여개의 개선과제중에서 그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10대과제가 선정되었고, 오늘 4가지 분야의 발제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판로지원법) 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판로지원법 제정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전국의 사회적경제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부처별 개별법에 근거한 사회적경제 정책은 중앙 행정의 부처별 칸막이가 사회적경제 현장에 그대로 전이되는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의 중복, 이해관계의 충돌 등 다양한 형태의 비합리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정부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적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제품의 시장 확대를 위한 판로지원법의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하고 기업으로서의 생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시장의 확대는 단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과 사회적경제인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판로지원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2년 11월 08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승석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사회적연대경제 연대포럼 관계자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공감해 힘을 보태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여러 단체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IMF 위기,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여러 경제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성과도 있었지만, 취약계층이 가장 크게 위기를 감내해야만 했던 뼈아픈 교훈 역시 얻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약자까지 포용하며 성장하는 사회적경제가 각광 받는 이유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습니다. 금융 지원, 판로개척, 인재양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전 2만여 개였던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2020년 3만2천여 개로 늘어났고 관련 취업자 수도 31만 명에 이르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멍니다. EU 27개국 전체고용량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UN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 전략으로 사회적경제를 택했습니다. 올해 6월 OECD는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 역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토론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로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애썼는데 결실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눠주실 고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

갖고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태년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연대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호중입니다.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함께 주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토론회를 주도적으로 챙겨주시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주관으로 뜻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등 힘을 보태준 다양한 단체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사회적경제 관계자와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3년째 제도개선 토론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펼쳐보면 언제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최우선과제로 적혀있는 것을 볼 때마다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이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재차 다지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제도개선 토론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지 못했지만 사회적경제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롭고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등장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것이 사회적경제를 추동하는 힘이라 믿습니다.

오늘 토론회 또한 기본법과 판로지원법을 비롯해 협동조합 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 택시협동조합 관련 법 개정, 사회적금융 기관인 신협 관련 법 개정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여러 주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하나하나 꼭 필요한 내용들인 만큼 본 토론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나 방향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그 변화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해나가는 데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토론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경청하여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적경제계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 일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함께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사회적경제연대포럼 공동대표·국회의원 윤 호 중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풍성한 결실과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만추의 계절에 마련된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관심을 갖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여 주신 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연대포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 토론회를 공동주관하여 주신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중 패권전쟁이 지속되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외교와 안보, 사회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총체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위기상황에서도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UN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GDs)를 설정하고 실천전략으로 사회적경제를 핵심의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의 전체고용량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작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관련 국정과제 44 ‘사회서비스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고도화’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

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을 도모”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중 저의 주된 관심사는 ‘자활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는 과제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금년 1월 28일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자활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자활사업 26년이 되는 해인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자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마찬가지로 수급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를 위해 자활사업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한 바 있는데,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거쳐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자활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점차 쌀쌀해지는 날씨,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더불어민주당 · 서울송파병 국회의원 남 인 순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 국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경제의 실체를 법률로 제도화하려는 입법적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국가마다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듯,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과 이해도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적 경제를 대한민국 법률로 명문화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사회적 경제의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가 시장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논의를 발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의 발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국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정부 부처별로 상이한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을 통합해 낼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활발한 논의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연대포럼 관계자분들과 김태년·윤호중·남인순·신동근·김영배·양경숙·이수진(비)·강은미·장혜영·용혜인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제해주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님, 김현아 아이쿱생협연합회 제도개선 팀장님, 이한우 세무사님,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님과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각계 의견 수렴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특수성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정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1월 0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서구를 지역구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먼저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꾸준히 사람중심 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사회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이승석 상임대표님과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민간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행사를 위해 함께 해 주신 민주당 김태년/윤호중/남인순/진선미/김영배/양경숙/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장혜영 의원, 본 행사를 주관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하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동료의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의 주류화는 이미 국제적인 흐름이라 볼 것입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채택하여 2030년까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38가지 구체적 행동을 개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사회경제) 성장을 함께 해온 100년 역사의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6월 110차 총회에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했고, 1990년부터 사회적경제에 주목해온 경제협력기구(OECD) 역시 지난 6월 사회연대경제 혁신에 관한 강력한 수준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국제연합과 국제기구들이 사회적경제에 이토록 주목함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와 맞닥뜨렸습니다. 세계가 분열과 갈등에 휩쓸리는 동안 기후위기는 재난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완화, 환경문제 해결은 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주류화는 현재 상황의 가장 효율적인 해법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ILO 협동조합 통계 수집 시범사업, OECD 공동행동에 참여하며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논의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OECD의 국제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해 인프라 개발과 각종 지원 방안 증진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다. 기후위기 해소, 사회통합과 공동체 회복의 시급함은 사람과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명확히 사회적경제 주류화의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토론회가 더욱 뜻깊게 생각됩니다.

저는 20대, 21대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 활동을 해오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문화 확산으로 증가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응,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까지 확대하고, 용기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원 순환 정책의 대전환이며, 국가 순환 경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현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고용은 불안정한 명백한 위기상황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상생의 삶만큼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방식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자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서 ‘사회적경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등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법 제정과제, 자조적 사회안전망 현실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이번 토론회에서 다루는 제도개선 과제에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사회적경제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인천서구을지역구 국회의원

신 동 근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오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이 주최하는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태년, 윤호중, 남인순, 진선미, 신동근, 양경숙, 이수진(비), 강은미, 장혜영, 용혜인 국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 발전 뒤에는 경제적 양극화,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도 증대되면서 전 세계적 아젠다로 자리 잡은지 오래입니다. 이에 대응해 지난 2015년 UN은 지속가능발전지표(SGDs)를 설정하며 그 실천전략으로 사회적경제를 채택했고, 유럽연합(EU)은 2020년 사회적경제를 핵심의제 중 하나로 채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지난 6월 사회연대경제 혁신에 관한 강력한 수준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기후위기와 사회통합, 공동체 회복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아직 미흡합니다. 2020년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잠들어 있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협동조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등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가치 촉진을 위한 사회적목적사용 비용 손금처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정비 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산적해 있는 제도적 과제들을 차근차근, 하지만 빠르게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번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는 바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의 시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에 사회적경제 생

태계가 정착하는 것은 물론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배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사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양경숙입니다.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연대포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사 개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김태년, 윤호중, 남인순, 진선미, 신동근, 김영배, 이수진(비), 강은미, 장혜영, 용혜인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간 ‘한강의 기적’ 이라 불릴 만큼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며 저성장 · 청년실업 · 고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가 제시됐습니다. 이미 해외 주요 국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자치 조례를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걸음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지만, 몇 년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 또한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도 미진한 실정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뒷받침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오늘 행사는 현재의 상황을 되짚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서 사회적경제 제도 개선을 위한 10대 과제 등을 제안해주실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늘리고, 연대와 공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토론회를 이끌어주실 윤봉란 제도개선위원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님, 김현하 아이쿱생협연합회 제도개선 팀장님, 이한우 세무사님, 하재찬 한

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님 그리고 토론에 함께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경숙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사말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한 행복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먼저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주최하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와 사회적경제연대포럼에 감사드리며, 함께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김태년·윤호중·남인순·진선미·신동근·김영배·양경숙·강은미·장혜영·용혜인의원님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상황과 사회안전망의 후퇴로 서민경제, 시민사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통해 사회통합적인 경제활동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로의 회귀, 부자감세에 치중하며, 오히려 사회적경제, 시민사회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상호자조와 연대의 경제를 활성화해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중요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 판로, 법제도 등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임의로 왜곡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할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환경 조성의 일을 하지 않는 구실로 삼는 일도 나타나고 있는

데, 정부의 제대로 된 이해와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제가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속 가능성과 이러한 기업들의 확대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법안이며,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세법상 손금처리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법안이지만, 영리기업 중심의 현행 법제도들에 대한 개선은 수년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제도가 활동을 경직되게 하는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촉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법제도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사회적경제 주체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적극적인 토론으로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인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단체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현)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현)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현) 제21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발달과 산업고도화로 불과 5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첨단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낳은 불평등과 빈부격차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단한 저소득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강요되면서 공동체는 파괴되었으며,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조차 위협받는 새로운 신분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 되고, 이에 따른 산업과 일자리의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으나, 정의로운 전환이 준비되지 못하면서 가난한 사람들부터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낙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경제입니다.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공동체적이며, 보다 인간적인 사회적경제를 성공시키는 것은 자본 중심의 경제가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이 새롭게 생기고 있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 되었지만 국민의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생각하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떠오르는 것은 박원순 시장만큼 사회적경제에 관심과 애정을 보인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 일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공동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성장 속도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또 대통령과 시장이 바뀌더라도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이 지속될 수는 또 다른 방법은 제대로 된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마을배달플랫폼 사회적기업, 대리운전, 택배서비스 등 플랫폼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도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과 여성, 노인 등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모델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의 뒷받침이 되는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과 신용협동조합 법인출자 허용 등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도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지역공동체 안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국회토론회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에 자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기후위기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표되는 경제난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경제·사회 시스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가
능하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데에 많은 시민께서 뜻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사회적 가치가 바로 세워진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와 이에 맞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
다. 이미 UN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전지구적 지속가능성의 실천전략으로서 사
회적 경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올해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와도 연관이 있는 의
제입니다. 특히 국정과제 44번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에서 혁신적
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직접 호명되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마련을
위한 우리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미진한 모습입니다. 실제 국내 전체고용량에서 사회적 경
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정권 성
향을 불문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이 이어져 왔으나,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
제 환경 속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미처 열악한 실정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사회적 경제가 국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부
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자리하신 모든 분들의 참여로
의미 있는 토론이 오가길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연대포럼에 감사드리며, 김태
년, 강은미, 신동근, 이수진, 용혜인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시민사회의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08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축사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반년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사라지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마저 ‘효율성’ 과 ‘이윤 창출’ 이라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쪼그라드는 현실이 유감스럽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쪼그라든 자리에서 불평등과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개별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퇴행을 거듭하는 지금,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요구가 아닌, 시민의 행복에 복무하는 경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입니다.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려면, 사회적 경제가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2014년부터 8년 간 미뤄져온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합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되는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주목합니다. UN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설정하며 그 실천전략으로 사회적경제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공공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탄탄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체계를 촉진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저 역시 힘을 모아내겠습니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라는 기본소득당의 슬로건은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사회적 경제 모두 우리 사회의 공유부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용혜인은 사회적경제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에게 삶의 기반을 보장하는 경제 체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연대포럼,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08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 배경 및 목적

- 사회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과 기후위기로 확인되고 지속가능이 핵심가치로 공감되는 이 시대에 적합한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이 시대에 적합한 경제 생태계는 소비자와 생산자, 세입자와 건물주, 노동자와 고용주 등이 구분되기 보다 통합적 관점에서 소비자이자 생산자적 정체성, 건물주이자 세입자의 정체성, 노동자이자 고용주인 정체성이 작동하는 경제 생태계여야 할 것임.
- UN은 지속가능발전지표(SGDs)를 설정하며 그 실천전략으로 사회적경제를 선택했고, 2020년 유럽연합은 사회 위기상황에서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면서도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사회적경제를 핵심의제 중 하나로 채택했음.
 - 유럽연합 27개국의 전체고용량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3% 수준에 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약 1.1%에 불과함.
- 우리 대한민국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오기는 했으나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일반 주류 경제 생태계 속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넘어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시점임. 새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국정목표 3의 44번 과제 <사회서비스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고도화>에서 호명하고 있음.
- 그러나 새 정부 6개 국정목표* 중 2,3,4,6번 과제가 사회적경제와 관련이 있음.
 - *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5.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이에 전 세계가 지속가능이란 대전환을 위해 주목하는 사회적경제가 대한민국에서도 그 역할을 활발히 하도록 하는 생태계가 마련되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이루고자 함.

○ 개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수하여 진행

- 일 시: 2022년 11월 08일 10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유튜브 생중계 병행
- 주 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사회적경제연대포럼**
 - ** 공동대표: 이승석 연대회의 상임대표, 윤호중 민주당 국회의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은평구청장)
 - 공동실행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
- 주 관: (민주당 국회의원) 김태년, 윤호중, 남인순, 진선미, 신동근, 김영배, 양경숙, 이수진(비례)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장혜영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

- 공동주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활성화_전국네트워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 후 원: 라이프인, 이로운넷,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세부 운영안

좌장: 윤봉란 제도개선위원장(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시간	세부내용
10:00~ 10:25	개회 : 2022 제도개선 과정, 환영사 및 축사 등
10:25~ 10:30	기념 촬영 및 정리
10:30~ 11:30	주요 제도개선 과제 발제: 주제 및 과제 참조 *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김현아 아이쿱생협연합회 제도개선 팀장 이한우 세무사,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
11:30~ 12:10	기재부 등 지정 토론
12:10~ 12:30	참여자 토론

※ 토론회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제 및 과제

1주제: 사회적경제 제도적 생태계 기반 구축

(과제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과제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주제: 협동조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과제3)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 (사회적)협동조합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 확대

3주제: 사회적가치 촉진 및 사회적경제 차별 개선을 위한 세제 정비

(과제4) 사회적경제 차별 개선을 위한 세제 정비

-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내국법인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협동조합 이용고배당 및 출자금배당 배당소득세 감면
- 협동조합 조직변경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문제

(과제5) 사회적가치 촉진을 위한 사회적목적사용 비용 손금처리

(과제6) (가칭)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정비

- 기부금품 모집법 개정(현행 운영비 15% 제한 해제 및 확대)

4주제: 자활/택시/신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과제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자활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과제8) 택시협동조합 관련 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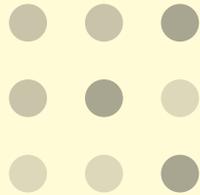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입라전에관한법률」의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도’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 택시협동조합 적용 제외 필요

(과제9) 신협 타법인 출자 제한 해제<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신협법 내 출자 제한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기본법과 개별 법 간에 충돌 문제해결>

5주제: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10) (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 소액대출, 공제사업 허용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 대상을 법인인 회원에서 회원의 조합원까지 확대, 상호부조 사업의 한도 기준 변경>



2022년 제도개선 활동 경과 보고

이기대 팀장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2022년 제도개선 활동경과 보고

이기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 간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의 제도개선 추진

사회적경제는 구성원의 공동이익, 호혜와 연대, 사람중심의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2018년부터 현장의 제도개선 사례를 수집·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또는 5대) 과제 선정’ 하고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부문·업종·지역 등을 고려하여 총 17명 위원을 위촉하고 매월 정례회의 및 제도개선 수집 캠페인, 움부즈만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역차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022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를 선정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하고자 합니다.

* 추진현황

- 2018년에는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2019년도 부터는 연대회의가 제도개선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주최자로 지금까지 함께 함.
- 2020년에는 연대회의가 제안하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의원들과 사회연대경제지 방정부협의회가 참여한 ‘사회적경제연대포럼’ 가 2020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 대과제 국회토론회와 함께 출발하여 이후 연대회의와 함께 주관하고 있음.
- 2021년에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광역시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 및 전국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활동단이 참여함.

□ 제도개선 활동경과 보고

○ 2022년 활동 현황

-활동주체 :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시기 : 2022년 1월 ~ 현재

-활동방식 : 매월 제도개선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한 사례 수집 및 과제 선정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 총 17명(부문/업종/지역 등)

윤봉란	사회적협동합 살림(제도개선위 위원장)	오경아	경기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부회장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김병규	사)사회적기업연구원 협동조합센터장
연정민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유길의	사)커뮤니티와경제 협동조합지원센터장
박철훈	지역과소셜비즈 상임이사	조세훈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사무국장
박향희	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본부장	김순환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사무국장
황은하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실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김종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실장	박기훈	자활기업협회 사무총장(필요시)
신재민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파트장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이기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간사)		

-활동내용

- 매월 정례회의를 통한 사례 수집 및 토론 등을 통한 개선 방안 논의
- “2022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 제안해주세요!” 캠페일 실시(8월)_사례수집
- 사회적경제기업 규제/애로 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 간담회 실시(9월)
 - * 9월 27일(화) 옴부즈만지원단장 및 기업대표 총 13명 참석
 - * 협동조합 의결권 행사 개선(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등 총 14개 주제 관련 논의

-2022년 사회적경제 제도 관련 주요 개선 현황

- 「여성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여성기업 인정 가능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가 지원사업 등에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

-2022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1주제-사회적경제 제도적 생태계 기반 구축

(과제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과제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주제-협동조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과제3) 협동조합 서면 및 전자투표제 도입/연합회 회원 자격 확대

3주제-사회적가치 촉진 및 사회적경제 차별 개선을 위한 세제 정비

(과제4) 사회적경제 차별 개선을 위한 세제 정비

-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내국법인 인정 / 배당소득세 감면 / 조직변경 시 과세 문제

(과제5) 사회적가치 촉진을 위한 사회적목적사용 비용 손금 처리

(과제6) 비영리형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정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4주제-자활/택시/신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과제7)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과제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 및 운송비용 건가금지제도 ‘택시협동조합 적용 제외

(과제9) 신협 타법인 출자 제한 해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5주제-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10) (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 소액대출, 공제사업 허용

○ 2021년 활동 경과 및 과제

-활동주체 :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 전국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활동단

-활동시기 : 2021년 1월 ~ 12월

-활동방식 : 매월 제도개선위원회 상기 회의 통한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논의

- 4월 / 상설위원회로 위원 재구성, 활동단 모집
- 7월 / 제도개선 활동 방향 및 계획 수립 (그간 접수된 사항과 개선경과를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8월 / 전국에서 취합된 총 44개의 제도개선 사항 중 5대 제도개선 과제 선정 (위원회, 법률자문단, 활동단 총 40명 참여)
- 9월 / 대안 내용 전문가 자문
- 10월 / 2021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11월 / 제도개선 토론회 평가회의 실시

- 2021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제안	
1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법인이 소유, 운영하는 사회주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3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여성기업 인정
4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시 내부인력 인건비 등 규제 항목 시정
5	돌봄노동의 특수성과 근로감독 문제 개선

-선정 배경

- 21대 국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우리사회를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자조·자립·협동·연대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제를 묶어내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업이나 활동을 진행하는 데 역차별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함.

○ 2020년 활동 경과 및 과제

-활동주체 :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시기 : 2019년 7월~12월

-활동방식 : 코로나19 대응 및 4·15 총선이후 새롭게 국회가 열리는 관계로 위원회 활동이 지체 되었음

- 6월 / 상설위원회로 위원 재구성, 활동단 모집
- 7월 / 제도개선 활동 방향 및 계획 수립 (그간 접수된 사항과 개선경과를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신규 개선접수사항은 국회의원 학습회/토론회로 진행)
- 8월 / 제도개선 10대 과제 선정 (위원회, 법률자문단)
- 9월 / 신규 활동단 오리엔테이션/ 대안 내용 전문가 자문
- 10월 / 2021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11월 / 제도개선 토론회 평가회의 실시

- 2020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제안	진행 현황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20.07.14. 윤호중의원 대표 발의
2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06.01. 박광온의원 대표 발의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8.24. 김정호의원 대표 발의
4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5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20.06.01. 박 정의원 대표 발의
6	생활소비자협동조합법-주무부처 변경	
7	신용협동조합의 타법인 출자 허용	20.07.09. 박 정의원 대표 발의
8	일반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도입	
9	법인 변경시 과세 완화	
10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선정 배경

- 20대 국회에서는 입법 활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바, 수월성 측면에 주목하여 신속한 개선결과를 도출하고자 했음. 21대에는 국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우리사회를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자조·자립·협동·연대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제를 묶어내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체제에 대한 공공의 대응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바, 일명 사회적경제 3법으로 불리우는 사회가치법과 판로 지원법은 제도개선과제의 우선순위로 올려야 할 것임.
-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법인격으로서, 경제경영 철학과 이론에 대한 몰이해와 사업상의 제약이 많은 바, 제도개선 요구 또한 많음.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주요한 조건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가능해졌으나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한 측면, 협동조합으로의 법인전환을 수월하게 하는 것,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회 운영 관련 사항을 시급히 제안함.

○ 2019년 활동 경과 및 과제

- 활동주체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 활동시기 : 2019년 2월~12월
- 활동방식 : 현장 의견의 온라인 수렴, 전문가 검토 후 10대 과제 도출, 각 과제별 법개정안 개발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 대안의 국회 법안 발의 및 각계 전달 추진

-활동성과

- 1건 해결(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 10대 과제 중 2개 법안 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마을기업육성법)

-활동평가

-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전문기관 및 현장연구자들에 이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이 결합하였고, 위원회 산하 ‘제도개선 활동단’ 을 두어 참여의 폭과 실행력이 증대되었음.
- 전국의 사회적경제인들이 모인 제2회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제도개선 부스를 마련하여 활동을 홍보하고, 제도개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상시적인 접수를 가능케 함.
- 2019년도의 성과와 과제에 기반하여 제도개선활동은 연대회의 내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다루게 됨.
- 제도개선 제안 사항은 언론홍보, 국회 및 부처에 전달 되었으나, 20대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마을기업육성지원법 등의 제정법은 통과되지도, 후자는 발의 되지도 못함. 생협, 자활기업 및 그리고 협동조합의 제도 개선 사항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며, 부처별 노력과 관심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로 토론회 이후의 여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를 지지하는 국회 파트너 그룹을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대회의 차원에서 21대 총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여, 70여명의 후보자가 참여하였고, 이중 50여명이 당선되어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해 갈 것을 기대함.

- 2019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제안	
1	법인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취득세 과세문제 개선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적용대상이 아님
2	대도시의 등록하는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중과세 개선

	-지역주민 복리증진 등의 설립목적을 갖는 협동조합이 대도시에 설립된다는 이유로 등록면허세를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	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도, 지원,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요건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지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4	상인조직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포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협동조합이 상인조직의 유형에 포함되도록 개선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 이관 -현행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
6	인터넷등기소의 협동조합 관련 서식 지원 필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등기서식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
7	협동조합 출자금 변경등기 시 의사록 증빙 문제 개선 -등기업무편람 등을 통해 조합원의 가입, 탈퇴가 갖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등기업무 실무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필요
8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제정 -지속적인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
9	중소기업기본법 내 중소기업자 범위에 자활기업 포함 -소규모성로 기업 활동을 하는 자활기업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해 정책적 지원 연계
10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지역 중심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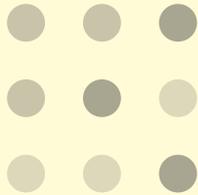
○ 2018년 활동 경과 및 과제

- 활동주체: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활동시기: 2018년 7월~10월 (이후 개선 활동 지속 전개)
- 활동방식: 현장 의견의 온라인 수렴, 전문가 검토 후 10대 과제 도출, 각 과제별 법 개정안 개발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 대안의 국회 법안 발의 및 각계 전달 추진
- 활동성과
 - 3건 해결(협동조합의 상조사업 허용, 해산요건 간소화, 서면투표제 한시적 도입), 지속적 및 범사회적경제 진영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
 - 1건 관련 부처 전달, 1건 현장 의견에 따라 포기(전문직 협동조합 법인 허용)

-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전문기관 및 현장연구자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참여하였고, 전국적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수집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 관심이 끌어 냄
 - 구체적인 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신속한 진행 가능
 - 지속적인 전달 및 현황 파악 플랫폼 기능 강화될 필요
 - 현장 의견 수렴 기간과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수렴 위한 보완 필요
- 개선 방안
- 연중 활동 추진 체계 정립
 - 활동 주체의 확대를 통한 과제 해결역량 강화
- 2018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제안	
1	해산 요건 및 절차 개선(협기법 제57조) -조합원 총회소집통지도달 → 설립정족수 제외 -활동하지 않는 경우 → 유예기간 경과 후 해산 간주 -불법적 활동 → 해산명령
2	의결권 행사 개선_서면 및 전자투표 가능(협기법 제23조) -협동조합 규모 및 조합원 지역 분포 등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요건에 따라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3	등록면허세 완화(지방세법 제28조) -출자금 변동이 잦고 재정이 실태를 고려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변경등기에 대해서는 최저세액 적용 제외
4	상조사업 진입 허용(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본법협동조합도 허용하되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에 기한 사업안정성 고려
5	농·어업인 협동조합의 농어업 경영체 인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현행 영농조합법인, 상법상 회사만 농지소유 가능 기본법 협동조합도 허용
6	안마사 등 전문자격인 협동조합 등 설립 허용(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대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준용되어 협동조합 설립 불가 다만, 필요성에 비해 제한이 과도하다 판단되며 협동조합 설립 허용 필요
7	공증면제 완화(공증인법 제66조의2) -주식회사의 경우 10억 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공증 면제이나 협동조합의 경우도 발기설립의 경우 공증면제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할 것임
8	지역사회공헌 사업비의 손금인정(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므로 공익성과 이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지역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손금 인정
9	지자체의 사회적협동조합 출연 인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해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방정부와 민간이 민관거버넌스를 이뤄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음
10	엑셀러레이터 등록 허용(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고 있고 협동조합의 창업을 협동조합 법인격을 가진 협동조합 전문지원기관이 할 수 있도록 인정 대상 법인격에 협동조합 추가



발제문 1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김대훈 사무총장 (전국협동조합협의회)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토론회]
협동조합의 정체성 구현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정비의 방향과 과제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들어가며

올해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그리고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0년 전 세계로 확산된 금융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했습니다. 그런 성찰의 결과로서 시민이 주체가 되고 탐욕이 아닌 실제의 생활세계를 지키는 경제활동의 성과, 경제활동의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을 UN은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해 각국에 협동조합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하고 협동조합 진흥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개별법 협동조합의 체계에서 해소되지 못한 협동하려는 사람들의 열망이 모였고 정부,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0년 간 현장의 협동조합들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시장, 공공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창출,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하고자 경제활동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협동조합을 결성, 시민 중심 경제의 토대를 만들고 가꿔왔습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맞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위한 도전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진흥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선 협동조합과 조합원 스스로의 자조하고 협동하려는 노력, 지역사회와 조합원, 잠재적인 조합원인 이웃들의 문제를 창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혁신과 도전이 중요합니다. 지난 10년간 고군분투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일선의 협동조합, 조합원, 협동조합 운동가들의 열정과 진심 어린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법률, 제도, 정부, 입법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은 시민들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결사체이자 조합원,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필요한 일들을 경제적 방식을 풀어나가는 사업조직, 기업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협동조합의 독특한 정체성이 존재하고 법률, 제도 역시 이러한 협동조합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정비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 입법기관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 환경의 조성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들이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제도정비 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기초가 올해 출범한 정부에서도 지속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기본법의 정비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의 발전 단계에 대한 간략한 진단

1. 거의 모든 경제활동 분야, 업종, 지역에서 23,000여개에 달하는 단위 협동조합이 설립 -> 민주주의와 시민의 직접 참여에 기초한 경제활동의 방식으로 협동조합 확산, 국가 경제의 한 부분으로 정착,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확산 (활동조합의 조합원 약50만 명)
2. (실태조사 결과) 전체 협동조합 대비 운영추정 협동조합은 8,926개(운영률은 49.5%), 조합원 10인 이하의 협동조합 비중 60%로 발전단계 초기, 소규모 협동조합이 다수
3. 120여개의 (이종)연합회가 설립되는 등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구조를 만들고 협동경제의 경험을 축적해가기 시작 연합회의 공동사업, 공동행동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음.
4. 기본법 제정 이후 10년이 협동조합 모델의 수용, 확산, 잠재력 축적의 과정이었다면 향후 10년은 본격적인 성장, 발전, 진화의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임
5. 민간의 상호협력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과 도전 그리고 공공/제도정책의 지속적인 지지기반이 중요한 시기

협동조합 정체성의 정립과 구현을 위한 연구 및 제도 정비과제

1. 일반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명시, 반면,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간주(실질적으로 영리법인)
- 국제적으로도 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의 조합원 소유, 이용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 잉여의 배당 2) 잔여재산의 배분이 가능한 국내 개별법 협동조합 역시 비영리 내국법인임.
- 그러나 일반 협동조합은 국내 개별법 협동조합과 동일한 구조 및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으로 간주(상법 준용)하고 있어 협동조합이 정체성, 고유한 조직적 속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세제 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의 성격 재정립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

*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의 법인 성격 비교

구분	법인성격	잉여 배당	청산 시 잔여재산의 배분
개별법 협동조합	비영리	가능	가능
기본법	협동조합	가능	가능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불가능

2. 협동조합의 상호성 기준 정립과 세제 연계 방안 검토 필요

-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정관 자치의 원칙 협동조합 사업의 지역사회 개방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임.
- 다만, 협동조합이 상호성을 유지,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데 이 점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보완이 필요함.
- 참고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금지, 불법으로 인식하고 예외적으로 홍보 등의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1) 조합원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2) 다른 협동조합 법률과 같이 조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관 자치를 강화하고 3) 비조합원 이용 비율에는 일정한 한도(총리령으로 규정, 생협 합의안 30%)를 두어 상호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공정위와 생협 간 합의된 제도 정비의 필요성, 방향을 기초로 의원입법으로 생협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 예정)
- (세제와의 연계 방안) 상호성 기준을 준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개별법 협동조합에 적용하고 있는 세제지원 제도를 일반/사회적협동조합 모두에 적용 (당기순익과세 또는 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
- (해외 참고 사례) 이탈리아의 경우, 조합원 이용 비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면 “상호성에 기반한 협동조합”으로 인정하여 세제 상의 지원(저율과세 등)을 하고 있음.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현장의 과제 및 제도개선 과제

1.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연합회의 활성화 방향과 촉진 방안

- (방향) 지역/업종/부문 연합회가 공동의 유대, 경험, 지식, 자원을 바탕으로 동료 협동조합을 서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연합조직의 역할 강화 (촉진)
- (연합회의 활성화 촉진) 조직/서비스 커버리지의 수평적 확산, 기능/공급망의 수직적 결합 구조, 공동시설, 공동사업,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협동을 위한 장치(기금, 공제, 상호금융)를 만들고자 하는 연합조직을 지원
- (연합회 창립 지원) 연합조직의 전략적 설계와 추진을 위한 연합조직 개발 프로그램 제공 (연합회 추진주체에 대한 심화교육/훈련, 연합회 창립지원 프로그램 등)

2. 협동조합 생태계의 성숙을 위한 과제

1) 연합조직(연합회, 협의회, 협회 등)의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컨설팅 역할 강화

- 연합회의 신규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컨설팅 역할 강화 (2022년 예, 의료사협, 학교사협 등)

- 축적된 연합조직의 인큐베이팅 역량, 회원조합 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지역, 업종에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설립되고, 안정적인 운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연합조직의 역할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 (계속 사업, 확대)

2) 연합조직(연합회, 협의회, 협회 등)의 역량강화,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

- 현재 진흥원 등의 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사업(연간 40~50개 프로그램 지원)은 예산, 규모, 기간 등에 있어서 1차 단위 협동조합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 시행되고 있고 연합조직의 규모, 수요, 수행 기간에는 적합하지 않은 체계로 설계되어 있음.
- 이에 연합조직의 교육, 훈련, 공동사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연합조직에 적합한 규모, 기간, 예산이 뒷받침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지역, 업종 단위에서 연합조직의 공동사업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함.

3) 협동조합 생태계의 진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들

- 현재 상태 : 제약이 많은 자조 수단,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산업/기업정책의 허들, 과소자원 한계 안에서의 고군분투하는 상황 (천수답)
- 미래 지향 :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제, 기금, 상호금융, 자본조달 수단을 제공하고 사업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과제 (공동의 저수지)
- 협동조합 연합회 등 연합조직 활성화 : 연합회의 연합회 가입 허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조합/사업조합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 제공
- 협동조합 공제 활성화 : 회원조합의 조합원까지 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 확대
- 우선출자 활성화 : 한도 확대 (현재는 자기자본 또는 납입출자금 중 큰 금액의 30%로 제한)
- 기금 조성 활성화 : 연합조직(협동조합 연합회 등)의 기금 조성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기금 조성 촉진을 위한 매칭펀드 (예, 협동조합 성장펀드 등) 조성
- 상호금융 허용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 협동조합/연합회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 구성원이 참여하는 상호금융 허용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 중요 관점 : 자생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은 현장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적 기반을 공고하게 마련해주는 것임

3.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 확대

(1)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직에 기존의 다른 연합회도 포함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의 경우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설립할 수 있음.

- 그러나 연합회의 회원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연합회 회원으로 타 연합회가 가입함으로써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고 규모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단되어 있음.
- 초기 연합회의 경우,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다른 회원과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합회가 더 큰 협동의 구조를 만들고자 설립하는 연합회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보다 큰 협동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또한 단위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법인 조합원으로서 2차 협동조합인 연합회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 바, 연합회의 회원으로 2차 협동조합인 기존의 다른 연합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음.

(2)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개별법 협동조합의 범위 확대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다른 법률(협동조합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있는 추세임. 다만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는 농촌, 소도시 지역사회에서는 농협, 산림조합, 수협,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 협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기본법 협동조합과의 협력, 협동의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협동조합의 운영상 애로의 해소를 위한 과제

1. (사회적)협동조합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 「협동조합기본법」상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 총회를 진행해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직면하여 대면총회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합은 총회 지연으로 사업계획·예산·결산 보고서 등을 승인 받지 못해 사업 추진 등 조합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음.
- 이에 20년 3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 허용”을 통해 (의결의안)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을 서면총회로 가능하도록 허용 했으며 이는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견 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가 가능하게 조치하였음.
-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선 후 한시적인 조치는 연장되지 않고 기존과 같이 대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하여 주식회사 등은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통해 이사

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도 코로나 19와 같은 대면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 또는 충분히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 내 정관(규약/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총회 및 전자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운영 상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현재 정부 발의안, 의원 입법안으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부안은 재난 상황 등의 상황 발생 시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함 (송갑석 의원의 발의안 참고)

[참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비고
<p>2102949 (2020-08-13)</p> <p>판로확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일정비율 의무구매)</p>	<p>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상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p> <p>유럽 등 선진국은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 사회적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EU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음. 우리나라 정부도 2017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판로확대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p> <p>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과 달리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물품 우선구매실적이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물품 구매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조달시장 참여와 자생력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p>	<p>의원 입법 (정성 호 의원 대표발 의)</p>
<p>2103391 (2020-09-01)</p> <p>판로확대 (일정비율 의무구매 및 우선계약)</p>	<p>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p> <p>그러나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하고,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8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2018년에 사회적 경제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총 9,403억원 규모로 공공기관 전체 물품 및 서비스 구매액의 2.3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3항).</p>	<p>의원 입법 (김원 이 의원 대표발 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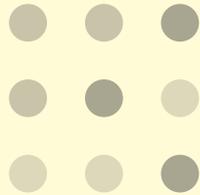
<p>2107098 (2020-12-31)</p> <p>운영개선 (재난, 감염병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 를 통한 총회 개최 및 전자서명, 의결 허용)</p> <p>거버넌스 (연합회 임원 중 조합원이 아닌 자 선출 허용)</p>	<p>제안이유</p> <p>최근 협동조합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따른 자본잠식,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임원선출대상 확대 등 다양한 문제점들에 직면하면서 과거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방식 또한 새로운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음.</p> <p>현행법 상에는 조합원이 총회장소에 직접 출석·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조합원이 총회장소에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원격영상회의를 이용한 총회 방식을 모색하거나 유한책임회사 등 법인이나 비영리 사단법인 등이 각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때 해당 법인 등의 순재산이 자본금의 총액보다 적어 자본잠식이 우려될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이 해당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조합원 중에서 선출했던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임원을 조합원이 아닌 자도 선출이 가능토록 하는 등 협동조합 운영방식 제반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p> <p>이에 총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 조직변경한 협동조합 등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순재산액의 차액에 대한 보전의무, 임원선출 자격의 확대 등을 통하여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선을 하려는 것임.</p> <p>주요내용</p> <p>가. <u>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는 조합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u></p> <p>나. <u>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조합원은 전자서명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제29조제3항 신설).</u></p> <p>다.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보다 적은 법인 등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토록 함(안 제60조의2제9항 및 제105조의2 제11항 신설).</p> <p>라. <u>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는</u></p>	<p>의원 입법 (고용 진 의원 대표발 의)</p>

	<p>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조합원이 아닌 자도 선출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78조).</p>	
<p>2107219 (2021-01-07)</p> <p>생태계 활성화 (연합회의 연합회 회원가입 허용)</p> <p>운영개선 (실태조사 주기 조정, 변경신고 대상 축소, 재난 시 서면,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 허용 등)</p>	<p>제안이유</p> <p>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과 긴급의안 제안권을 신설하고, 이사회의 이사 또는 감사도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대상을 축소하여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 또는 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내용</p> <p>가.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자격 확대(안 제2조, 제71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1항, 제115조의2제1항 및 제115조의4제1항)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에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외에 각각의 연합회도 포함되도록 하여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와 연합회의 규모 확대를 지원함.</p> <p>나. 협동조합 실태조사 조사주기 변경 및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 요청 권한 규정(안 제11조제7항 및 제8항) 협동조합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결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실태조사 시행주기를 기본계획 수립주기에 맞춰 3년으로 변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 고용노동부장관 등에 대해 매년 과세정보, 피보험자 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p> <p>다.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대상 축소(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71조제1항 후단)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 시에 신고한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함.</p> <p>라. 재난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한 의결 허용(안 제23조제5항 및 제75조제2항 신설)</p>	<p>정부 입법 (기획 재정부)</p>

	<p>재난 발생으로 협동조합 조합원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이 정상적으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p> <p>마.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결의(안 제28조제6항 신설) 재난 발생으로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 전원이 사전에 동의하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총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p> <p>바.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28조의2, 제29조제3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2조제4항·제5항 및 제33조제2항 신설)</p> <p>1) 조합원이 총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감사가 감사 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감사가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p> <p>2) 총회 안건에 관하여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배제하고,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하며,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p> <p>3)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변경 등 중요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안건으로서 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함.</p> <p>4) 조합원이 총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사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안건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은 제안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안건으로 삼도록 함.</p> <p>5) 이사 또는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 권한을 인정하여 이사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함.</p>	
--	--	--

<p>2109052 (2021-03-23)</p> <p>정책적 지원 강화 (국가 및 지자체의 협동조합 육성,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시책 수립, 시행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p>	<p>현행법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 교육훈련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유형별 협동조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활성화가 되고 정책개발이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요구됨. 특히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통제조업에 기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에 비해 그 규모가 영세하고 소규모여서 다른 협동조합과 함께 발전하기에는 육성 여건부터 조성되어야 함.</p> <p>이에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저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u></p>	<p>의원 입법 (이용 호 의원 대표발 의)</p>
<p>2112743 (2021-09-29)</p> <p>규제 개선 (협동조합이 영위할 수 없는 산업분야 제한 해제 : 금융, 보험)</p>	<p>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정 당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축은행 사태와 맞물려 협동조합금융업의 부실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p> <p>그러나 <u>협동조합이 뿌리내린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경제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협동조합 경제를 지탱하는 자금공급 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고용창출에도 높은 기여를 해왔음.</u></p> <p><u>비금융 산업 분야로 제한된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혈액과도 같은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u></p> <p>이에 개정안은 <u>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함(안 제45조제3항 및 제80조제3항 삭제 등).</u></p>	<p>의원 입법 (김정 호 의원 대표발 의)</p>

<p>2114764 (2022-02-14)</p> <p>판로확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p>	<p>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동 등과 같은 공익증진 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임.</p> <p>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에 관한 지도, 지원, 연락 등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여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p> <p>이에 <u>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정관에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15조).</u></p>	<p>의원 입법 (위성 근 의원 대표발 의)</p>
<p>2116770 (2022-08-03)</p> <p>운영개선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의 의결권, 선거권 행사 허용)</p>	<p>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석 또는 대리출석을 통해서만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p> <p>그런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직접출석 또는 대리출석을 통해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p> <p>이에 <u>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의결권 및 선거권을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표를 방지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u></p>	<p>의원 입법 (송갑 석 의원 대표발 의)</p>
<p>발의 예정</p> <p>제도 실효성 제고 (연합회 공제사업의 참여 범위 확대)</p>	<p><u>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연합회 등이 시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참여 범위를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 뿐 아니라 회원조합의 조합원 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u></p>	<p>의원 입법 (발의 예정)</p>



발제문 2

사회적가치 촉진 및 사회적경제 차별 개선을 위한 세제 정비

이한우 세무사 (세무법인 화우)

사회적경제 기업의 차별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I. 서론

사회적경제 기업은 재화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조세지원도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기업 간 또는 협동조합 상호 간에 차별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이하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차별 과세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회적경제 기업의 종류와 과세

1. 사회적경제 기업의 종류

2020년 11월 5일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익적 성과로서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¹⁾

<표 1> 사회적 가치

구분	내용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②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③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④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⑤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⑥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⑦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⑧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3조 제1호 및 제2호.

⑩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⑪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⑫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사회적경제 기업은 <표 1>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²⁾

<표 2> 사회적경제 기업의 종류

구분	근거 법령	사회적경제 기업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사회적기업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④	「농업협동조합법」	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⑤	「수산업협동조합법」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⑥	「산림조합법」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⑦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연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⑧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⑩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	마을기업
⑫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자활기업
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	재정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⑭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에 의해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2)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3조 제3호.

⑮	기타	그 밖에 기업·법인·단체 중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조직
---	----	--

사회적경제 기업은 크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법인 등,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의 ②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③부터 ⑩까지의 협동조합에 포섭되지 않는 협동조합으로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표 2>의 ②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이라 하고 ③부터 ⑩까지의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라 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기업도 법인으로서 헌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과세

가. 법인세

(1) 소득금액 산정 방법

사회적경제 기업은 법인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면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이 일정한 기간(사업연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이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라 한다.

소득금액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³⁾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손비는 이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⁴⁾

사회적경제 기업의 소득금액은 해당 기업이 사업 활동으로서 재화 및 용역의 판매 등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입에서 그 사업(재화 및 용역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재화 등의 구매 비용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3) 법인세법 제15조.

4)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소득금액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산정하는데, 손금의 범위는 해당 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사회적경제 기업의 소득금액 산정

구분	내용
익금	사업 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서 순자산을 증가시킨 금액
손금	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비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소득금액 산정	소득금액 = 익금 - 총액

(2) 법인세 과세 범위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으로서 그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인세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영리법인은 사업의 구분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 되지만 비영리법인은 <표 4>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 된다.⁵⁾

<표 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구분	내용
사업소득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자소득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 및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등
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등
주식양도소득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⁶⁾
기타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

5)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6)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제외한다.

비영리법인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된 수입으로서 그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표 4>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구분	내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법인 ⁷⁾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
조합법인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영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영업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 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100%, 사업소득은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⁸⁾

(3) 법인세 과세 방법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금액, 소득공제, 이월결손금⁹⁾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소득금액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당기순이익¹⁰⁾에서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한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 사항 중 일부만 반영한 후 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정한다.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그 외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정 방법은 <표 6>

7)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으로 구성된다.

8)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9) 법인이 소득이 아닌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손실을 법인세법에서는 “결손금”이라 한다. 결손금은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10) 법인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장부를 통해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손익계산서는 기간별 이익에 대한 성과보고서로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현황을 보여준다. 당기순이익은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 손실이 발생하면 “당기순손실”이라 한다.

과 같다.

<표 6>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그 외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정 방법

구분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일반 법인
소득금액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사항 중 일부 ¹¹⁾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과세표준	소득금액	소득금액 - 비과세 소득금액 - 소득 공제 - 이월결손금
세율	9%, 20% ¹²⁾	10%, 20%, 22%, 25% ¹³⁾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당기순이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 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다. 사업연도 이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않는다.¹⁴⁾ 또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고정 자산의 처분이익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법인¹⁵⁾은 일반 법인이 적용받는 세율(10%·20%·22%·25%)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세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4)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사회적경제 기업은 개별 법률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11) 세무조정 사항 중 일부란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기부금 손금불산입, 접대비 손금불산입,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을 말한다.

12) 과세표준 20억원 이하까지는 9%이지만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13)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을 초과하면 25%가 적용되는 4단계 누진세율 구조이다.

14) 일반 법인은 결손금이 발생하면 10년까지 이월하여 이월결손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1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표 7>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구분	종류	영리법인 여부	법인세 과세
사회적기업 (인증)	「민법」에 따른 법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상법」에 따른 회사	영리법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협동조합	영리법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협동조합	협동조합	영리법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당기순이익 과세(일부 세무조정 반영)
마을기업 (인증)	「민법」에 따른 법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상법」에 따른 회사	영리법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협동조합	영리법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자활기업 (인정)	「민법」에 따른 법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상법」에 따른 회사	영리법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협동조합	영리법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농어업인들의 일자리 창출 기업	「민법」에 따른 법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상법」에 따른 회사	영리법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협동조합	영리법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영농조합법인	영리법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영어조합법인	영리법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농업회사법인	영리법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어업회사법인	영리법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나.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사회적경제 기업이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출자금을 등기 또는 출자금의 증감을 등기하면 등록면허세가 과세 된다.

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사회적경제 기업의 존재 형태

사회적경제 기업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영리법인·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 등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증·인정 및 재정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인들의 일자리 창출 기업(이하 “인증 사회적경제 기업”이라 한다)이 있다.

둘째, 법인 그 자체가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사회적경제 기업”이라 한다)이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인증 사회적경제 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인증 사회적경제 기업

인증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회적기업은 여러 가지 조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인증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농어업인들의 일자리 창출 기업 중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은 재정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부터 다양한 조세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들을 제외한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가) 사회적기업

① 법인세 감면

사회적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5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에 2,000만원을 곱한 금액과 1억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¹⁶⁾

② 취득세·재산세 감면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¹⁷⁾

③ 부가가치세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¹⁸⁾

(나)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업(어업)회사법인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업(어업)회사법인은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부터 다양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①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일정 범위의 금액¹⁹⁾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

16)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 및 제3항.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18)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19) 작물재배업의 소득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당소득 중 일정 범위의 금액²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 5%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분리과세 한다.²¹⁾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청년 농업 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및 고정식 온실·「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²²⁾

② 영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 범위의 금액²³⁾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일정 범위의 금액²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 5%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분리과세 한다.²⁵⁾

영어조합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²⁶⁾

20)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그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과세 연도 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내지 제3항.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2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어로어업 소득"이라 한다) : 3천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어로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24)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 연도 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③ 농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범위의 금액²⁷⁾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일정 소득²⁸⁾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일정 소득²⁹⁾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한다.³⁰⁾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청년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및 고정식 온실·「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³¹⁾

④ 어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³²⁾

27)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8) 일정 소득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29) 각주 26의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30)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제4항.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3) 사회적경제 기업

(가) 법인세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종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이들 협동조합도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과세 되는데, 이들의 법인세 과세 방법은 제각각이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 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 되지만 그 소득의 50%(사업소득)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지만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 사항의 일부만을 반영하여 법인세가 과세 된다. 각각의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법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 방법

구분	과세 방법
협동조합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함
사회적협동조합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소득의 50%(사업소득)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나) 취득세 및 재산세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³²⁾

- ㉠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 ㉡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 ㉢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②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³⁴⁾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³⁵⁾

④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³⁶⁾

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2%의 세율(본래 2.8%의 세율이 적용됨)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한다.³⁷⁾

⑥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³⁸⁾와 제2호³⁹⁾ 및 제4호⁴⁰⁾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38) 신용사업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내국환,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어음할인,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39) 복지사업을 말한다.

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⁴¹⁾

⑦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⁴²⁾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⁴³⁾

(다) 등록면허세

다음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5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⁴⁴⁾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40)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42)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라) 출자금에 대한 조세지원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다음의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배당소득 등“이라 한다)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2023년에는 5%, 2024년 이후에는 9%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한다.⁴⁵⁾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 ③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④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Ⅲ. 사회적경제 기업의 차별 과세

1. 사회적경제 기업의 형태에 따른 조세지원의 차별

사회적경제 기업의 조세지원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사회적경제 기업의 조세지원 현황

구분			조세지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배당소득	
인증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기업	영리법인	○	○	○	×	
		비영리법인					
	마을기업	영리법인	×	×	×	×	
		비영리법인	○	×	×	×	
	자활기업	영리법인	×	×	×	×	
		비영리법인	○	×	×	×	
	농어업인 일자리	일반 법인	영리법인	×	×	×	×
			비영리법인	○	×	×	×

4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창출 기업	농어업 법인	영농조합법인	○	○	○	×
			영어조합법인	○	○	○	×
			농업회사법인	○	○	○	×
			영어회사법인	×	○	○	×
사회적 경제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	×	×	×	
		사회적협동조합	○	× ⁴⁶⁾	×	×	
		개별법에 따 른 협동조합	○	○	○	○	

사회적경제 기업을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조세지원 여부가 달라지는데,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증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영리법인에 대한 조세 혜택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서 농어업법인은 기존부터 많은 조세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법인세에 대한 조세지원 대상에서 어업법인을 제외함으로써 농어업법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은 조세지원이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집중되어 있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조세 혜택을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그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서 감면율은 제각각인데,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지원으로서 사회적기업은 100%(4년) 및 50%(2년), 농어업법인은 100% 등,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형태에 따라 법인세 감면율 등을 각각 다르게 적용받는다.

사회적기업과 농어업법인 및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다. 또한, 취득세·재산세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형태에 따라 감면율 등이 제각각이다.

46) 사회적협동조합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해 주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2. 협동조합 간의 법인세 과세의 차별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 낮은 세율(9%, 20%)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반면, 협동조합은 다른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10%, 20%, 22%, 25%)로 과세된다.

3.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차별 과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으로부터 2가지 형태의 배당으로서 출자에 따른 출자배당과 협동조합의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는다. 이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개별법에 따른 8개의 협동조합 중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조합원들은 1,000만원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렇지만 그 외의 협동조합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조합원들은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협동조합의 형태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4. 협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⁴⁷⁾ 조직변경이란 법인이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⁴⁸⁾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로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⁴⁹⁾ 그렇다면 법인 등이 보유한 부동산 및 차량을 협동조합으로 이전함으로써 법인 등에서 협동조합으로 명의를 변경할 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 과세권자의 해석에 따라 취득세 등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기존에 과세권자가 해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47)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48) 김재광, “법인의 조직변경과 과세상 문제점”, 「조세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06, 376면.

49) 법인세법 제78조.

<표 10> 조직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⁵⁰⁾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물적회사 간의 조직변경(상법)	유한회사 → 주식회사	과세 ×	과세 ○
	주식회사 → 유한회사	과세 ×	과세 ○
인적회사 간의 조직변경(상법)	합명회사 → 합자회사	과세 ×	과세 ○
	합자회사 → 합명회사	과세 ×	과세 ○
물적회사에서 인적회사로 조직변경 (상법 이외 법률)		과세 ○	과세 ○
인적회사에서 물적회사로 조직변경 (상법 이외 법률)		과세 ○	과세 ○

과세권자는 <표 10>과 같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조직변경에 따른 부동산 등의 이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간의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산 등의 이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등기를 한 경우 유한회사가 소유하던 영업용 차량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에서 과세권자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후의 양자 간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과세권자는 유한회사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를 유한회사(주식회사)는 1좌(1주)이지만 협동조합은 1인당 1표로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⁵¹⁾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한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1인 1표 및 무한책임을 지는 인적회사로서 이러한 회사를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한 경우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물적회사로서 유한회사는 출자 1좌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이다.⁵²⁾ 그러나 법원(1심 법원)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을 변호사법이 다르게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구성원의 대외적 책임의 한도와 함께 인적·물적 규모와 자본충실을 위한 행위 제

50) 세정 13407-711, 2001.12.26. 등.

51) 지방세운영-1847(2016.06.17.).

52) 조심2019지0839(20190619).

한 등을 범무법인과 달리 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상의 차이만으로 범무법인과 범무법인(유한)이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하여 조직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⁵³⁾ 이후 제2심(서울고등법원)도 1심 법원과 동일한 판단을 함으로써 처분청의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는 법원이 물적회사와 인적회사 간의 조직변경도 동일성을 유지하여 부동산 등의 이전에 대해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서 추후 과세권자와의 분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이 아니므로 처분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즉,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회사 등을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 등의 이전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주식회사 등을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5. 사회적 가치를 위해 지출한 금액의 손금 불인정

사회적경제 기업은 재화·용역 등의 생산·구매·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면서 <표 1>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즉, 사회적경제 기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지출(이하 “사회목적 비용”이라 한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목적 비용의 손금 인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이 달라진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이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비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재화·용역 등의 판매 및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러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손비로서 <표 1>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사회목적 비용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기업이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창출한 수익은 5,000만원이고 이를 위해 발생한 손비가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2,000만원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 될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기업이 이익 2,000만원을 <표 1>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목적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이 창출한 이익은 0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목적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이익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5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077, 2020.06.09.

<표 11> 사회적목적 비용에 대한 손금 불인정에 따른 법인세 부담

구분	실질 소득에 따른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수익	5,000만원	5,000만원
비용	3,000만원	3,000만원
사회목적 비용	2,000만원	0원
이익	0원	2,000만원
법인세	0원	200만원

IV. 개선방안

1.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통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형태에 따라 조세지원은 제각각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표 1>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우선적인 선호라든지 또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형태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달라지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회적경제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은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세제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이 전혀 없거나 또는 과도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대국가를 조세국가라고 한다. 조세는 각자의 담세력에 맞게 과세 되는데, 특정 단체에 조세지원을 통해 비과세·감면을 적용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경제 주체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적경제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사회적경제 기업에 과도한 조세지원을 하면 그만큼 다른 사회적경제 기업의 조세지원은 줄어든다. 조세는 국가재정을 위해 징수하지만 특정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이라는 조세지원을 하기도 한다. 즉, 조세는 재정수입 측면과 특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세제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표 1>의 사회적 가치는 국가가 조세 징수를 통해 직접 실현할 수도 있는데, 정책 세제로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즉, 사회적경제 기업에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그 조세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조세지원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조세지원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고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차별적인 조세지원은 그

들 간의 과세 공평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일함으로써 조세지원이 없거나 적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세지원을 하고 과도한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낮춤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조세지원이 동일하도록 입법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협동조합 간의 법인세 과세의 차별 시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이들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지원 제각각이다. 특히 당기순이익을 베이스로 한 법인세 과세는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만 적용받는다. 협동조합의 설립은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데, 그 법률 목적의 유사성⁵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협동조합인지에 따라 조세지원은 달라진다. 특히,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개별법 따른 협동조합이 적용받는 당기순이익 과세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들 협동조합도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본래 당기순이익 그 자체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

54)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자립·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⑤ 산림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⑥ 연초생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⑦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⑧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복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⑨ 새마을금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산정하였는데, 이렇게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도입한 이유를 문헌 연구에서 최초로 언급한 것은 기장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조합법인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⁵⁾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해 기장 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접대비 손금불산입 등으로 과세 범위를 점점 넓혀왔고 궁극적으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과세권자가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과세 범위를 넓히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취약한 기장능력 때문에 도입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기장(記帳)이란 장부에 적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장부작성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산정하는데, 이는 기장능력 여부와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왜냐하면 정말로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기장 능력이 없다면 당기순이익조차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무조정 능력이 미약하여 그들의 외부 세무조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아무튼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는 1981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개정이유에서도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도입이유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문헌상으로도 찾을 수 없어 어떠한 의도로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 거래의 대부분은 조합원들이고 그 거래 가액도 일반가액보다 낮은 것이 대부분으로서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⁵⁶⁾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즉, 협동조합에 대해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저가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법인세가 과세 될 수 있는 상황이 늘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의 범위를 더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을 토대로 법인세가 과세 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55) 김완석·심태섭,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 제도 개정방안”, 『조세연구』 통권 제20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31면.

56)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차별 과세에 대한 시정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연대와 협력으로 만든 사회경제적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자금은 조합원이 납입하는 출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재무적 성과가 미흡하므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렵다.⁵⁷⁾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구성원이 납입하는 출자금에 대해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출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⁵⁸⁾ 이를 위해 현재 개별법에 따른 8개의 협동조합 중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조합원들은 1,000만원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이를 나머지 협동조합으로 확장함으로써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출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애로가 없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4. 협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비과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 등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협동조합으로 이전할 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과세 된다. 이는 주식회사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주식회사 등을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부동산 등을 이전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이들이 조직변경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승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주식회사 등을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것은 기업의 형태만 바꾼 것일 뿐 그 실질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승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통해 기업의 형태만 변경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부동산의 등의 명의변경에 불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회사 등을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권자가 해석함으로써 주식회사 등을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면서 진행되는 부동산 등의 명의변경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주식회사 등을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하는데 있어 가장 큰

57) 금융기관은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부채로 보아 부채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부채비율이 높아 협동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가 매우 어렵다.

58) 박성욱·신충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5호, 2018, 102면.

결립돌로서 과세권자가 해석을 변경하여 이들의 조직변경에 따른 부동산 등의 명의 이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만약, 과세권자가 기존 해석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 주식회사 등을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등기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조직변경 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부동산 등의 명의이전에 따른 등기를 할 때 과세 된다. 따라서 주식회사 등을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하면서 주식회사 등의 부동산 등을 이전할 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등을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입법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적 가치 비용에 대한 손금 인정

사회적경제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차이점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재화 등을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가치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경제 기업이 법인세를 과도하게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국가가 조세를 통한 재정지출을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의 조세감면 등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국가의 재정지출에 기회비용 및 초과부담 등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표 1>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지출하는 사회목적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이상의 내용으로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차별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사회적경제 기업의 차별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차별 과세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기업의 형태에 따른 조세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일

지원의 차별	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
협동조합 간의 법인세 과세의 차별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을 토대로 법인세가 과세 될 수 있도록 입법 개선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차별 과세	개별법에 따른 8개의 협동조합 중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이외의 조합원들도 1,000만원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되도록 입법 개선
협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	협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동산 등의 명의이전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도록 입법 개선
사회적 가치를 위해 지출한 금액의 손금 불인정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출하는 사회적 가치 비용에 대해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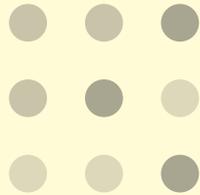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차별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은 입법 개선으로서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오늘 국회 토론회가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계획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차별 과세를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발제문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현행 세제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조세 지원을 하고 있어 개별적인 세제 개편 방안으로서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더 복잡한 세제와 차별 과세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지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그것을 토대로 조세지원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차별 없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완석·심태섭,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 제도 개정방안”, 『조세연구』 통권 제20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김재광, “법인의 조직변경과 과세상 문제점”, 「조세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06.

박성욱·신충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5호, 2018.



발제문 3 자활/택시/신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하재찬 상임이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자활기업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발표자: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근로 여건과 의지가 높아진 2인 이상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이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자활기업은 국기법에 제18조 ①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현재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인정(제18조의4에 의해 인정취소를 받을 수도 있음)을 받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공익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현재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국기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챙기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없어, 보다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조직별 지원 및 관리 체계는 법적 근거의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사회적경제조직별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요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법인격	자격		
목적	조합원 권익향상, 지역사회공헌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지역단위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탈빈곤
근거	협동조합기본법(2012)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주대상	이해당사자	취약계층	지역(마을)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본계획	법 근거 3년 단위 수립	법 근거 5년 단위 수립	-	-
실태조사	법 근거 2년 단위	법 근거 5년 단위	지침 근거 1년 단위	-
사업보고	법 근거 경영공시 (사협 및 일정기준 적용)	법 근거 (연 2회)	-	법 근거 (연2회) (21.7월 개정)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통합지원기관 16개소		마을기업 지원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1개소 -광역자활센터16개소 -지역자활센터 250개소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인큐베이팅 교육, 홍보사업 등 판로개척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 협동조합종합 정보 시스템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지원 법인세/ 소득세/취득세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업 개발 등 재정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 경영컨설팅, 판로 등 경영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기업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 등 마을기업 설립 전후 교육 판로지원, 홍보 지원, 네트워크 조성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기업 창업자금 한시적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 지원 시설보강비, 우수자활기업 지원,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지도 및 창업교육 등

사회적경제조직별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요에서 알 수 있듯이 자활기업의 경우 기본 계획과 실태조사가 이루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기법에서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나,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은 없다. 단 2018년 7월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제1~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자활기업 활성화 과제를 포함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개별법을 통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자활기업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정부가 가장 먼저 (생산적)복지 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적극 추진한 것은 사회적기업의 모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활기업(공동체)일 것이다. 그럼에도 자활기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국기법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따라 3년 단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국기법 제37조(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기법 시행령 제10조(자활사업) 범주에 자활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활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차원의 계획 수립이 전무한 상황은 아니다.

국기법 제18조 ③항에서는 보장기관이 자활기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관심도, 의지 등에 따라 자활기업 지원의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매년 지원내용이 변경되어 중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정책 추진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법률 비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올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자활기업을 간접적으로 언급했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및 근로유인 강화, 근로 역량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확대 등을 밝히고 있는 바, 국기법 개정을 통한 자활기업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자활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 개정 및 적극적인 자활기금 활용 등 그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올 7월 사회적경제박람회 중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기본계획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리고 제3차 자활급여기본계획('24~'26년) 수립 시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별도의 카테고리를 두어 제2차 기본계획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자활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란 자활기업 현장의 요구를 담아내고자 함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한편, 자활기업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이 제도화된 기본계획 수립 또한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국기법 제18조 ③항에서는 보장기관이 자활기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에 아래와 같이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다.

☞ 자활기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법률 조항 배치

1안) 제18조(자활기업) 다음 제18조의 2(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안)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다음 제20조의 3(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법률안

① 제@조(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조(보장기관*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기관은 관할 구역의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별 자활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조(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활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자활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의 교육·훈련
3. 법 제@조에 따른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에 드는 재정
4. 그 밖에 자활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

□ 시행규칙

제@조(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자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첨부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기업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춘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춘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7.27.>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2021.7.27.>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전문개정 2012.2.1.]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장기관은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의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8로 이동 2021.7.27.]

[첨부2]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협동조합기본법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

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와의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0.3.3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20.3.31.>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7항에서 이동 2020.3.31.>

[전문개정 2014.1.21.]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31.>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의 '택시운송사업자' 에 택시 협동조합 예외 조항 적용 필요

발표자: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

'대구 택시, 협동조합으로 위가 돌파' 2021년 1월 12일자 경제지 신문에 실린 택시협동조합 관련 기사의 제목이다. 9개 조합이 1,075대 운행하며 이는 법인택시의 24%로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내용과 함께 기사들이 공동 출자해 수익을 공유하며 책임 운행으로 수입_일반 택시 운수종사자 보다 월 70여만원 이상 많음과 만족도가 높다는 내용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택시협동조합은 일반택시회사와 달리 일정한 업무만 조합원인 운송종사자에게 위탁받아 관리해 준다. 이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운송종사자들이 상호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조합원인 운수종사자(피용자 또는 택시 노동자)가 운수사업자(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운수종사자(피용자 또는 택시 노동자)가 운수사업자(사용자)의 지위를 가져 정액 관리 및 운송비용전가 원인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 택시협동조합은 운수종사자가 공동 출자하여 함께 설립함.
운송종사자가 자신의 택시(또는 택시 구입 시 필요한 비용)를 출자하여 그 소유권을 협동조합에 두어 설립하고, 협동조합 탈퇴 시 출자한 모든 것을 반환받는다. 즉 택시협동조합은 운수종사자가 설립 창업자이며,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또는 택시)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운송종사자가 가지게 된다.
- 운송종사자는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자율적인 근로시간을 정함
운송종사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1인 1표에 의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협동조합의 경영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근로시간도 조합원인 운송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일정시간 근로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다.
- 택시협동조합 관리운영을 위한 제비용을 조합원인 운송종사자가 공동 부담
협동조합이 성과급이나 급여 형태로 정산하여 조합원인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종사자가 입금한 운송수익금 중 협동조합 운영을 위해 자신들이 공동 분담금으로 정한 소정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 취득한다.
※ 다른 법인운수사업자는 성과급이나 급여 형태로 정산

택시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법법에 의거하여 회계자료 등 공개의무와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가 총회 등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경영 감독 및 권한 행사를 한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협동조합의 투명관리 및

합리적 경영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택시협동조합은 운수종사자들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기에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과속운행 및 난폭운전 등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교통약자 배려 및 교통 봉사 등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하며 택시요금 인상이나 택시고급화 등으로 해결해 오던 택시문제 대부분을 운수종사자가 운수사업자의 지위를 통합적으로 가지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구 택시, 협동조합으로 위기 돌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택시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촉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택시협동조합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전가를 막는 등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용전가금지 조항(제12조)* 등이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 및 적용되어 그 취지를 저해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 법인택시운송사업자는 모두 대상(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 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군 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적용 제외)**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외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택시운송사업자와 주식회사 등의 일반택시 형태로 운영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택시 관련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택시발전법(운송비용 전가 금지)이 일괄 적용됨에 따라 올바른 택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택시협동조합은 운송비용 전가 발생 원인 자체가 없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 해소와 60세 이상의 노령층 일자리 창출 및 생활 안정의 역할을 하고 택시의 올바른 발전을 가져오도록,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송수익금 전액관리’ 및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용자-피고용자 관계가 아닌, 택시운송 사업을 함께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설립한 택시협동조합이 그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택시운송사업자가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운송수익금 전액관리 제도’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적용 대상에 협동조합은 제외하거나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법 개정 필요

*** 조치 필요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 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u>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p> <p>(이하생략)</p>	<p>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u>란 <u>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u>를 말한다.</p> <p>(이하생략)</p>	<p>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자”</u>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u>일반택시운송사업자</u>로 한다. 다만, <u>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u>는 제외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u>일반택시운송사업자</u>로 한다. 다만, <u>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u></p> <p>(이하 현행과 같음)</p>

[첨부1]

지역별 협동조합 택시 현황

2021.5.3기준

지 역	회사명	대 수	대표자(이사장)	비고
서 울	한국택시협동조합	56	이 일 열	
대 구	네오택시협동조합	270	김 호 상	
	대구택시협동조합	237	심 경 현	
	달구벌협동조합택시	95	김 영 오	
	드림택시협동조합	109	최 현주	
	대기택시협동조합	66	김 진 수	
	미소택시협동조합	69	한 석 장	
	운수대통협동조합	54	김 상 민	
	조일교통협동조합	126	서 명 속	
	제일택시협동조합	70	심 재 길	
	청구택시협동조합	83	이 호 영	
	한국택시대구협동조합	85	김 찬 석	
	광 주	한국택시광주협동조합	46	이 상 식
대 전	독립택시협동조합	33	최 상 규	
	우리택시협동조합	50	정 승 영	
	보령운수협동조합	67	오 재 영	
	대전택시협동조합	39	김 종 주	
울 산	해오름교통협동조합	49	한 희 창	
경 기	운수협동조합	47	홍 종 우	화성
	동두천금강택시협동조합	50	노 현 주	
전 북	우리택시협동조합	50	김 지 훈	
	무주택시협동조합	7	김 현 섭	
전 남	여수관광택시협동조합	30	박 중 권	
	우리무안택시협동조합	9	오 영 택	

지 역	회사명	대 수	대표자(이사장)	비고
경 북	한국택시포항협동조합	48	강 병 구	
	한국택시경주협동조합	67	이 상 효	
	희망택시협동조합	47	정 준 호	경주
	한국택시구미협동조합	93	이 윤 수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	115	한 오 석	
	의성삼성택시협동조합	12	최 영 환	
	대계택시협동조합	24	이 원 호	영덕
	봉화택시협동조합	27	권 동 섭	
	울진택시협동조합	9	신 상 중	
	울진동해택시협동조합	13	정 우 영	
	제일택시협동조합	26	이 중 철	상주
	평화택시협동조합	39	이상배	예천
	울릉택시협동조합	14	박 인 현	
경 남	창원협동조합택시	46	윤 석 권	
	사천택시협동조합	19	안 상 수	
	100번택시협동조합	19	허 흥 복	사천
강원도	춘천희망택시협동조합	139	이 원 모	
	소양 시민협동조합	35	방 근 성	
	하나협동조합	30	이 덕 일	
	강릉솔향택시협동조합	35	권 석 춘	

신용협동조합의 타 법인 출자 허용

- 신협에 대한 차별 개선을 통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강화

발표자: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

농·수·산림조합법에서도 출자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범위로 제한하면서 타 법인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새마을금고법의 경우에도 출자금총액과 적립금합계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제한하며 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법은 타 법인 출자 허용을 사업의 종류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동일기능 동일규제란 대 원칙에서 어긋난 차별적 요소이다. 이로 인해 타 법인 출자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한 투자가 곤란하다.

또한 2020년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신협, 생협,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회원이 되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설립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신용협동조합법」상 타 법인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연합회 설립 시 신협은 회원이 될 수 없어 현장에 많은 혼란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활성화와 잠재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생활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커뮤니티기반의 상호금융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호금융 중 커뮤니티기반의 금융으로서 신협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더군다나 신협은 전국 지역신협 중 80여 신협이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으로 등록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자 하나, 가장 적극적인 기여 방식인 출자를 할 수가 없어 매우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 2018년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조합의 타 법인(사회적기업 등) 출자 근거 마련'이란 규제영향분석서를 금융위원회가 작성하며, 농·수·산림조합법에서도 출자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범위로 제한하면서 타 법인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새마을금고법의 경우에도 출자금총액과 적립금합계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제한하며 타 법인 출자를 허용한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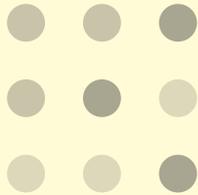
또 이 분석서는 그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으로 ① 조합의 타 법인 출자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조합의 자율적 투자 곤란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분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인 신협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② 여러 신협이 출자하여 설립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신협 간 공동사업 불가로 적시하고 있다.

조합이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게 하되,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도록 하는 규제내용과 사업 다변화, 수익 증대, 사회적경제 지원 등을 제고하면서도 출자할 수 있는 대상과 한도를 규정하여 무분별한 출자를 방지할 것을 규제목표로 하며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금융위원회도 신협이 차별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신협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바, 농·수·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와의 차별을 해소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사회적금융 강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신협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6. <생략> ④ 조합은 <u>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발제문 4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김현하 팀장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회연대공제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
아이쿱생협연합회 제도개선팀 김현하

1. 개정 취지

-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역사적으로 국가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생
활안전망을 보완해 저비용으로 질병, 상해, 실업 등의 공동 위험을 대비
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현재 기본법 공제는 회원조합인 회원만을 대상
으로 할 수 있어 법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성격의 공제만 가능함

- 공제는 오랜 전통을 가진 위험관리 수단이지만 민간 보험사의 과점
및 정보 비대칭에 따라 과도한 약관 해석 및 지급승인 거절 등으로
가입자의 효율적인 위험관리 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공제 활성화시
조합원의 편익 증가 기대
 - * 동아일보, ‘지급거부로 못 받은 보험금, 연간 1만 건 넘어’
 - * 한국금융연구원, 2020년 전체 금융 민원 9만 604건 중 보험 민원이 5만 3294
건(58.8%)으로 국내 대표적인 민원 집중 산업
 - * 협동조합은 과점 및 정보비대칭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중심의 경영으로 사회 전반의 기준을 높이는 공익성 발
휘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고용
노동자 등 기존 사회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과
산업군을 대상으로 상부상조에 기반한 상호부조 사업 및 공제 확대
로 국민 복지 증진
 - * 이륜차 유상운송 보험료가 높고 보험회사도 가입을 꺼려 배달기사의 경우 무보험
으로 영업하거나 영업용을 가정용으로 가입해 운영하는 경우 발생
 - * 특정 업종과 산업군에 한정해 운영되고 있는 정책 공제의 경우 해당 산업과 업종
에 진입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며 상호부조의 절대적 필요가 큰 계층의 경
우 공제 가입의 경로와 기회가 절대 부족

□ 비회원 이용을 허용해 일반 공제로 분류되는 새마을금고·신협·수협의 공제 상품과 달리 협동조합기본법의 공제는 **비회원 이용이 원천 불가능한 조합원 상호부조에 기반한 사업**으로 공제 성격의 차이가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 허용이 원천 금지

□ 보험회사가 ‘불특정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의 공제는 ‘**특정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제 상품의 **차별화, 특색화, 전문화**로 민영보험과 상호발전하며 사적보장과 사회보장 경계의 틈새 해소하고자 함

* 대학생의 경우 학비보장공제를 통해 **대학생의** 부양자 사망 및 중대 후유장애로 학업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 등록금 및 생활비를 공제 한도로 지원

2. 법개정 주요 내용

1)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 대상 확대

□ 현재 연합회 회원인 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공제에서 조합원의 복지 및 사회안전망 성격의 공제**로 전환하기 위해 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을 법인인 ‘회원’에서 **회원의 ‘조합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19~2022)은 연합회 고유사업인 공제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연합회는 전무

* 대수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공제의 특성상 경영안정을 위한 회원조합 대상 공제보다 **회원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가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으로는 불가

* 공제는 상호부조 원리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이지만, 국내는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 대규모 일반 공제와 준 공적연금 성격의 정책성 공제(경찰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외 **새로운 민간 공제사업 진입이 제한**

□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이미 **조합원의 사회안전망 성격의 상호부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 및 업종에서 조합원간 사회안 전망 모델 등장

- *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가 동행은 공익활동가 대상으로 상호부조 회비 5,000원으로 결혼, 이혼, 출생, 입양 뿐만 아니라 사망시 3,000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활동가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과 민간보험 가입이 없는 활동가들에게 유용한 상호부조로 기능
- *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늘어나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며 기존의 민간보험의 사적보장과 국가의 사회보장 경계의 틈새 해소 기대

□ 안정적인 규모의 연합회 설립을 위해 생협과 신협이 참여 가능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도입했지만, 연합회의 고유사업인 공제사업의 대상 제한으로 애초 정책 목표로 삼은 안정적 규모의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유인 왜곡

- * 생협법과 신협법 상 가능한 조합원 대상 공제가 생협과 신협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 경우 조합원 대상의 공제사업은 불가
- * 안정적 규모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목표로 생협과 신협이 함께 설립할 수 있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책을 도입했지만 연합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공제가 제외되면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고유 역할 축소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개별법 협동조합
공제사업	X	X	△ (회원조합인 법인 만 가능)	○ (조합원 대상 가능)

표2 협동조합 공제사업 비교

※ 8개 개별법 협동조합 모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 가능

2) 상호부조 사업의 한도 기준 변경

□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은 소액대출과 함께 사업 한도를 출자금 총액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호부조 사업은 소액대출과 달리 시행령에 따라 상호부조 회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 * 상호부조 사업의 경우 소액대출과 함께 시행령에 제도화되어 출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액대출과 함께 상호부조 사업의 운영특성이 제도에 미반영
- * 상호부조사업의 재원과 한도를 통일해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필요

	사업한도	재원	회계 처리	비조합원 이용
주사업	예산 내 범위	제한없음	정관으로 정함	가능
상호부조	출자금 내 한도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	별도 회계 구분	불가
소액대출	출자금 2/3 한도	출자금	별도 회계 구분	불가

표 3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및 소액대출 비교

□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은 비조합원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부수적 사업으로 조합원 대상의 상호회임

- * 회사 및 공공기관의 상호회의 경우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직원 회의 및 직장내 규정으로 자율적으로 규정

□ 상호부조 사업을 출자금 총액 한도로 국한할 경우 협동조합의 질적,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성격의 상호부조 활동이 축소되고 혼례, 사망, 질병 등에 대한 현실적인 상호부조 행위 제한

-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만큼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환급청구권 청구에 따른 반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자금 한도와 연계시 상호부조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안정적인 상호부조 사업 제한

□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는 공익적 사업을 위한 조합원간의 자조적 사업이며 사회안전망 목적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회비의 꾸준한 적립은 준비금 성격의 높은 건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발생할 피해 및 조합원 위험이 현실적으로 매우 적음

- *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7원칙에 따라 조합 사업은 조합원 자치 운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 아래 미연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출자금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자기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 한국의 개별법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해외 협동조합도 역사적으로 시작부터 모든 것을 갖춰놓고 시작한 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은 없으며 초기 단계의 협동조합

은 소비자 피해보다 육성의 관점으로 장려하면서 규모화된 경우 적합한 규제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발전

-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은 회계연도 이후 4개월 이내 경영 공시를 통해 상호부조의 활동과 결산자료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분리와 주사업 비율(40%)을 통해 상호부조 사업의 건전성 보호
- 그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의 한도로 정한 제94조에 납입출자금 한도를 삭제하고 사업의 한도는 시행령 제23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94조 2항에 위임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요약

1. 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 범위 확대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조합원의 경제적인 불안정 해소를 목적으로 하지만 현재 연합회만 공제사업은 조합원이 아닌 회원조합인 법인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공제사업은 제한되어 있음.

이미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에서는 이미 조합원 대상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협동조합 기본법 또한 제도 보완을 통해 조합원간 상호부조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협동조합기본법과 유사한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연합회에 회원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제도개선으로 공적인 사회보험과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의 틈새를 메우며 스스로에게 필요한 자조적 안전장치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상호부조사업의 한도를 납입출자금이 아닌 회비로 변경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은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이 납입하는 회비를 재원으로 혼례, 질병, 사망 등에 지원하고 있지만 법률에서는 '납입 출자금 한도'로 사업을 제한하고 있음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는 주사업과 회계를 분리하고 있고 재원을 상호부조 회비로 하는 만큼 사업의 한도를 출자금 한도로 제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엄격하게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해 수행하므로 납입출자금 한도를 삭제해도 상호부조 사업의 문제가 없음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략)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생략)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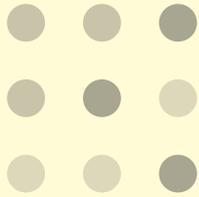
② -----

----. <단서 삭제>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

-----대상으로 소액대출과-----

② (현행과 같음)



토론문 1

김종필 실장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정체성 구현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정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종필(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업경영지원센터 기획실장)

발제문에 있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분야와 업종,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다. 운영률(49.5%)과 규모(10인 이하 협동조합 비중 60%)로 볼 때 아직은 발전단계의 초기로 볼 수 있지만, 경제활동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기본법 제정 이후 10년이 협동조합 모델의 수용, 확산, 잠재력 축적의 과정이었다면 향후 10년은 본격적인 성장, 발전, 진화의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발제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발제자가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현장의 요구와 어려움을 덧붙인다.

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 확대

-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도입한 취지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하여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국회 심사보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로 정의하고 있음.
- 발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농산어촌이나 소도시 지역사회에서는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함. 실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 설립을 문의하는 지역 농협들이 있음
- 법률의 취지나 변화하는 사회 구성을 볼 때 생협이나 신협만이 아니라 다른 개별법에 따라 만든 협동조합도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가입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협동조합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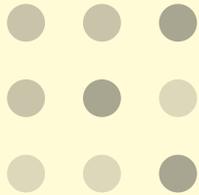
- 발제자가 제시한 상법 외에 민법에서도 서면으로 결의권 행사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정관에 따를 수도 있음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생략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실제 사단법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어느 조직은 온라인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하고 있어서 온라인 총회가 가능했음
- 의료사협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주소지를 지번과 호수까지 포함하여 정관에 포

함해야 함. 이 때문에 창립 이후 의료기관을 새로 내거나 의료기관이 이사를 하는 경우 주소지를 변경하는 아주 형식적인 행정 절차를 위해 수백 명의 조합원이 모이는 대면총회를 열어야 함. 이로 인해 비용과 시간 등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상당함

- 의료사협 외에도 조직 규모가 큰 협동조합, 복수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아예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으나 모두 예외 없이 대면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상법과 민법에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역차별 내용은 조속히,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임



토론문 2

김자유 이사장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기부금품법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한국모금가협회 전문회원)

1. 들어가며

□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한국전쟁 직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조세 징수에 방해가 되는 민간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가 현재는 그 규제가 다소 완화된 법률로서 비영리 사업이 고도화·다원화된 현 시대의 필요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이 법 개정은 오랫동안 현장의 숙원과제였다.

○ 실제로 국회에서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현 21대 국회에서만 2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가운데 지나친 모금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은 5건 이상 있었으나¹⁾ 실제 개정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기부금품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이 있으나, 본 토론문은 비영리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2. 기부금품법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관계

□ 사회적경제 기업 중에도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 본 토론회 제3주제 발제문(이한우)에 실린 <표 7>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영리법인 여부 항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중에도 비영리법인격을 가진 조직이 적지 않다.

○ 또한 영리법인일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출현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 다원화됨에 따라, 사회적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후원금으로 조달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채택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후원금을 약정하면 후원자전용 서비스나 기념품 등 반대급부가 제공되지만, 실질적으로 지불한 비용에 상응하는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그 예이다.

1)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엄형국 발제문, 2021

○ 법률이나 조세 제도에서의 구분하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영리와 비영리 사업의 구분,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구분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으며, 모금을 하나의 비즈니스모델로 채택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 기부금품법의 내용

□ 기부금품법은 대중 모금을 하려는 자에게 기부금의 모집 절차와 사용 방법을 규제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이다.

○ 첫째, 불특정 다수에게 대중 모금을 할 때, 그 목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사전에 계획서를 광역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제출, 등록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4조)

○ 둘째, 대중 모금을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고,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으로는 모금을 진행할 수 없다. (법 제4조 제2항)

○ 셋째, 모금한 기부금의 15%~10% 범위 이내에서만 운영비를 지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3조)

○ 넷째, 모금 계획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운영비를 규정보다 초과하여 지출하는 등 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법 제16조 ~ 제18조)

4. 기부금품법, 무엇이 문제인가?

□ 기부금품법의 이러한 내용 중 비영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가. 운영비 15% 이내 제한 규정

□ 기부금품법 제13조는 모금액의 15%~10% 범위 이내에서만 운영비를 지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운영비에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조직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대부분 포함된다.

□ 현대 비영리기업은 조직 규모나 사업 내용에 따라 재정 구조가 다양하기에 이를 세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부금품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중 모금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같은 대중 모금에 전적으로 수입이 의존된 조직이 있는가 하면, 기부금품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후원이나 정부보조금 등으로 운영하는 조직도 있다.

○ 또한 현금이나 현물을 소외계층 등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 조직은 전체 비용 중 인건비 등 운영비의 비중이 비교적 낮을 수 있으나, 고용된 전문인력이 교육을 제공하거나 공공의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등 사업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된 조직은 모금액의 15% 이내에서 운영비를 책정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현행 규정은 이러한 비영리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15% 이내 라는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비영리기업 간 차별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중 모금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가 민간 비영리기업의 재원조달 방식과 사업내용을 제한해버리는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²⁾

□ 또한 고용 계획 등 조직의 인사 전략을 수립하거나 미래의 성장을 위해 지금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등은 조직을 경영하는 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개입, 제한하여 비영리기업 경영자의 자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더욱이 비영리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들이 기부금품법의 ‘운영비 15%’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원칙적으로 직접사업비로만 사용하고 다만 10~20% 이내에서 인건비 등에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관행이 뿌리 깊게 이어져오고 있다. 이 때문에 비영리기업의 노동자들은 고질적인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³⁾

2) 어떤 의도를 가진 기부자에게 기부금을 조달했는가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나. 모금액 1천만원 이상 등록제

□ 기부금품법 제4조는 대중 모금을 하려고 할 때 사전에 관청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등록 대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금액 기준은 과거 ‘기부금품 규제법’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완화되는 시점인 2006년에 처음 도입되어 16년 넘게 개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 1천만원 기준이 도입된 2006년 대비 지난 15년간 국민소득은 약 1.5배 증가했으며,⁴⁾ 전체 기부금은 8.2조원에서 약 1.7배 증가하여 14조원에 이르렀다.⁵⁾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기부경험과 기부금액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기부금품법은 여전히 이같은 시장 규모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소셜미디어, 핀테크(간편결제 등)의 발달 및 대형 모금 사이트(해피빈, 같이가치 등)의 등장으로 인해 디지털 모금 인프라가 폭넓게 확대되었고, 이 때문에 단일 모금 캠페인을 온라인으로 확산하여 과거 전통 매체를 통한 모금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기부금을 빠르게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창작자나 예술가의 개인 프로젝트 펀딩 또는 유튜버 등 후원금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제는 조직이 아닌 개인마저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기부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 이처럼 ‘1천만원’ 기준은 국내 기부 시장의 성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비영리기업이 모금을 진행하려고 할 때 행정부담이 크다.

다. 모금 내용을 한정하여 허용한 ‘포지티브’ 규제

□ 기부금품법 제4조제2항은 대중 모금이 가능한 사업의 내용을 열거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표2>에 그 열거 내용을 보면 규

3) 「"너무 적은 월급에 못버터"...희생 강요당하는 시민단체 직원들」 머니투데이, 202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716170394825>)

4) 1인당 국민총소득, 2006년 2465만원, 2021년 3656만원, 통계청

5) 국내 기부금 총액, 2006년 8.2조원, 2020년 14.4조원, 국세청

제 요건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임 규정된 시행령이 제정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표2> 기부금품법 제4조제2항

<p>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특히 기부금품법 제4조제2항제4호는 영리성 모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⁶⁾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모금을 통해 조달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기부금품법상 영리성 모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안마다 판단하기 어렵다.

○ 반대로, 통상 공익성 모금으로 보이지만 영리성 모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도 있다. 영리기업의 비즈니스모델을 채택한 비영리법인(비영리스타트업 등)이 모금을 진행하는 경우나, 개인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창작자금, 여행자금, 소송비용, 수해비용 등을 모금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 이렇게 모금 형태의 다양한 변화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선량한 사회적 모금이 언제든지 위법으로 고발될 수 있는 실정이다.

라. 실효성도 없는 기부금품법

□ 한편 이 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에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례, 2019 (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3940)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기부금품법에 의해 등록된 모금액은 약 6723억원으로 집계된다.⁷⁾ 이는 2015년 국내 전체 기부금 약 12조원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국가가 민간의 기부금을 일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 많은 비영리기업들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기부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약정금액을 납입하는 정기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 모금시 이같은 정기후원자를 모집하는 것이 모금 활동의 중심이 된다. 이 경우 정기후원 약정과 동시에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회칙에 규정함으로써 연간 모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부금품법상 허용된 방식⁸⁾으로 판단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 일부 비영리기업은 혹시 모를 처벌을 예방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사전등록을 진행하는데, 모금목적은 포괄적으로 기술하여 연간 모금하려는 실제 금액보다 큰 금액을 매년 한 번씩 등록하는 것이 그 예이다.

○ 주무관청의 감독 또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모금을 하려는 자가 기부금품 모집 사전등록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하는 것에만 신경을 쓸 뿐, 이후 적법하게 운영이 되는지,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모금이 있는지 등은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기부금품법 개정방안

가. 운영비 15% 이내 제한 해제 또는 확대

□ 기부금품법 제13조의 모금액의 15%~10% 범위 이내에서만 운영비를 지출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비영리기업의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바, 이부분 규정 삭제할 필요가 있다.

7)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와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현황 및 실태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정진경, 2016

8) 기부금품법 제2조제1항가목에 의거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 미국, 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비 제한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조직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부자가 스스로 조직을 평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⁹⁾

□ 제한 해제보다는 점진적 입법개선을 검토한다면 현행 15% 규정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 이미 국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며,¹⁰⁾

○ 세계적인 국제 NGO 단체들의 운영비 비율이 15~34% 수준이고, 200억원 이상 모금하는 국제적인 단체의 경우에도 평균 15.2% 정도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금품법과 시행령의 15%~10% 제한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¹¹⁾

나. 사전등록 최소 금액 ‘1천만원’ 상향

□ 기부금품법 제4조의 1천만원 이상 모금시 사전등록을 요하는 규정은 지나친 행정부담을 초래하는 바, 금액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3천만원 이상’을 요건으로 논의되어 왔던 바, 이를 참고하여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상향이 필요하다.

다. 모금 내용 허용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기부금품법 제4조제2항의 모금이 가능한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바,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원칙적 허용’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산업

9) 기부금품 모집 사용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1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2021.1.

1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욱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4.

진흥을 위한 규제 개혁 차원으로 접근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활용해 건전한 사례를 발굴해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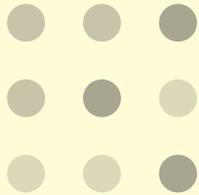
5. 마치며

□ 현행 기부금품법은 현재의 기부 문화와는 동떨어진 입법 목적을 유지한 채 비영리기업의 모금 행위에 대해 관청 주도의 규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 이제는 규제보다는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고민할 때이며 시민들이 스스로 모금 주체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부 시장을 자율성을 고도화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 기부금품 모집 사용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연합뉴스 발제문, 2021
-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와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현황 및 실태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정진경, 2016



토론문 3

심경현 이사장 (대구택시협동조합)

택시협동조합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토론편

토론자 : 심경현 대구택시협동조합 이사
(대구경북택시협동조합협의회장 겸 전국택시협동조합협의회장)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급여를 보장하고 고용 및 피고용관계로 형성되어 사용자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할 경우에 과속, 난폭운전 및 승차거부등 서비스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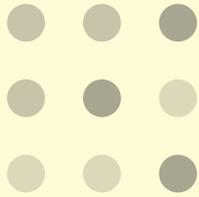
(장점)

- ① 택시발전법 입법취지에 매우 부합(협동조합)
과속,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일반법인택시보다 감소.
교통사고율 약 10% 감소
(협동조합 조합원 및 운수종사자로서 주인의식, 자율운영) :만족함.
- ② 은퇴자 및 신중년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제 2의 경제 활동과 그들의 건강한 사회활동으로 가정과 사회에 활력.
- ③ 소속감과 책임감이 높아 차량 청결 및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함.
- ④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운행비 부담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택시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경영을 위한 소유주의 공동 부담금이며, 출자금(현금, 현물)은 조합원 탈퇴시 반환함.
- ⑤ 심야 택시대란 → 협동조합 가동율 평균 90% 이상
→ 일반택시 : 30 ~ 35%
(협동조합 조합원 기사 야간 운영율 $\frac{2}{3}$ 이상)
(협동조합택시가 증가하면 심야택시 대란 자연적 해결)
- ⑥ 조합원(운수종사자)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만족도 증가→가동율(운영율) 높음
- ⑦ 일반 법인 택시의 사납금제 및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가 사고

로 연결되는 반면 협동조합택시 운수종사자는 근로시간 자유로이 선택 가능 (건강유지)하면서 간강한 문화생활 가능.

⑧ 택시협동조합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당사자들이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사업을 같이 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⑨ 택시발전법 개정이 시급함



토론문 4

이선민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이선민 변호사

1. 머리말

기존 사회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과 산업군이 상호부조 사업,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발제문의 내용 및 취지, 결론에 동의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다양한 상호부조 사례에 비추어볼 때,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연합회등이 회원 협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다만 조금 더 쟁점을 구체화하고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발제문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2. 협동조합의 공제사업과 보험과의 차이 필요

발제문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불특정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의 공제는 '특정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제 상품의 차별화, 특색화, 전문화로 민영보험과 상호발전하며 사적보장과 사회보장 경계의 틈새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한다.

협동조합의 본질은 '공통된 필요와 염원'을 가진 자들이 '공통의 필요와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데 있다(상호성의 원칙).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비조합원의 이용이 불가능한 점에서 이러한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사업의 대상이 조합원으로 한정 되어있다는 폐쇄적 속성과 일반인(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가입이 자유롭다는 개방적 속성이 병존한다.

공제사업과 보험이 기본적인 목적과 구조 부분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제사업의 경제적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을 "유사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¹⁾ 더 나아가 공제는 보험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

다고 설명되기도 한다.²⁾ 이러한 입장에서는 공제사업을 민영보험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 정도로 이해한다.

공제와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와 잉여금의 귀속, 지배권 행사의 주체에 관한 측면이다. 보험회사의 지배권은 전적으로 주주에게 있지만,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의 의사결정구조, 잉여금의 귀속, 경제적 소유의 권한은 모두 조합원에게 있다.³⁾ 또한 공제는 상호부조를 전제로 가입대상자가 일정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의해 한정되어 구성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과 차이가 존재한다.⁴⁾

조합원간 상부상조라는 공제사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조합원 간 신뢰와 유대가 구축된 연합회에 한정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한 자’가 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개방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입법을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기간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생협법 개정안

제77조의4(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 ① 공정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 한하여 공제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용협동조합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인 경우, 공제사업 감독기준 문제

협동조합연합회등과 다르게 다른 개별법 협동조합들은 모두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본법과 개별법 간 체계정당성과 관련한

1) 공제사업을 "유사보험"으로 부르는 경우로는 김정주, 김명규, "국내 공제산업의 배당에 관한 탐색적 연구", 손해사정연구 제12권 통합호, (2020. 10.), 신수식, "유사보험제도의 현황과 민영보험과의 상호발전방향", 보험개발연구 제9호, (1993) 등이 있음.

2)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21), 21.

3)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제사업등 생협의 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2012. 7. 18.), 36.

4)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의 글, 33.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협중앙회와 생협 연합회는 개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이 가능하지만, 신협과 생협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드는 경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없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 협동조합연합회등이 회원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선,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이 함께 제정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별법 협동조합들의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참고하여 ‘협동조합연합회등 공제사업 감독기준(가칭)’을 제정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라는 높은 수준의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기준이 적용된다면, 신용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공제사업을 제공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예를 들어 회원 대부분이 신용협동조합인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조합원들을 상대로 활발히 공제사업을 펼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회원 신용협동조합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우회하여 공제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만들어질 ‘협동조합연합회등 공제사업 감독기준(가칭)’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를 고려하되,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소규모의 공제사업 특성을 존중하면서 실효성 있는 감독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상호부조성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적절한 수준으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다 완화된 감독 기준을 개발·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위와 같이 구성원 대부분이 신협인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사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의 관계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제94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당시 발의된 세 가지 법률안 모두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당시 문제로 대두된 저축은행 사태 등을 내세워 정부 내 금융위

원회 등에서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제정당시 삭제되었다. 다만 협동조합 진영의 강력한 이의제기를 반영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만 상호부조를 허용하기로 하였다.⁵⁾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사업이란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당시의 논의와 「협동조합 기본법」상 공제사업의 정의(제80조의2 제1항)를 종합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사업은 공제사업의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 공제사업과 상호부조사업을 구분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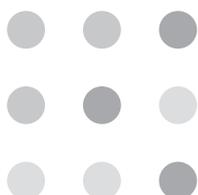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개별법 협동조합
공제사업	X	X	△ (회원조합인 법인만 가능)	○ (조합원 대상 가능)

[발제4] 中 표2 협동조합 공제사업 비교

5. 맺음말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조합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필요와 염원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개별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을 금지해놓았다.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 및 그 조합원들이 공제사업을 필요로 한다면,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5) 손낙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경과와 취지”,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5권1호(2013. 6.), 33.



윤영귀 과장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

Memo
